

개 선

제 목	무상분석서비스 운영 방법 개선
소 관 부 서	■■■■■■처
내 용	

■■■■■■처는 2011년부터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무상분석서비스를 총괄·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높은 호응으로 점차 실시 횟수⁹⁾를 확대하는 등 무상분석서비스 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.

무상분석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시료는 제시시료로서 「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」(이하 ‘세칙’이라 한다.) [별표 4]의 이동시험실차량의 운영방법·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, 「소비자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」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시료를 접수하고, 시험을 통해 그 분석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있다.

무상분석서비스 제도는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소비자 차량연료의 가짜석유제품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제도로써 결과통보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그러나 세칙 [별표 4]에서는 이동시험실차량을 통해 시험분석을 하는 경우 결과통보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각 부서에서는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.

9) 8회(11년) → 41회(12년) → 61회(13년) → 98회(14년) → 130회(15년) → 165회 예정(16년)

조치할 사항

■■■■■■■■처는 무상분석서비스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정 및 결과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